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
2)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제 6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목표

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내과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

1)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각 분과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전임의 명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전임의 기록카드
 (3)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2)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한 후 보고 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3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다.

3)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

4) 본 규칙은 2008년 2월 26일 개정되었다.